

2018 농식품 해외시장 맞춤형조사

No. 1811-24

품 목 : 딸기(Strawberry)

국 가 : 베트남(Vietnam)

Contents

I. 국가 정보 및 시장통계	03
1. 수출환경 및 경제지표	05
2. 식품산업 현황	09
3. 수출입통계 및 생산통계	14
II. 시장 트렌드	20
1. 정책 이슈	22
2. 제품 트렌드	22
3. 소비 트렌드	24
4. 유통 트렌드	27
III. 통관 및 제도	30
1. 통관 및 검역	33
2. 인증정보	41
3. 라벨링	43
4. 위생요건	49



I. 국가 정보 및 시장통계

- 1. 수출환경 및 경제지표**
- 2. 식품산업 현황**
- 3. 수출입통계 및 생산통계**

국가 개요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중부에 위치해 있고 북쪽으로 중국, 서쪽으로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바다를 면하고 있음. 베트남 전쟁 이후 1975년부터 베트남 공산권이 정권을 주도하고 있는 사회주의 공화국이며 1986년 대외개방을 표방한 도이머이(쇄신) 정책을 추진함.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경제 개혁을 추진 중이며 2015년 말에 출범한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에 참여하고 있음

전통적인 농업국이었으나 현재는 전자제품과 섬유·의류제품 등의 제조업 수출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농업 부문에서는 쌀과 커피가 주요 수출 품목이며 석유개발 성공 이후 원유도 수출하고 있음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형 특성상 북부는 여름이 긴 사계절의 아열대 기후이며 남부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열대몬순기후로, 남북의 환경 및 소비 성향의 차이가 뚜렷함. 경제 발달은 주로 남부의 호찌민(Ho Chi Minh)과 북부의 하노이(Ha Noi)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 최근 2017년 다낭(Da Nang)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관광 산업 홍보 및 유망한 투자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을 널리 알림. 한편 중국과 남중국해(베트남 동해) 해상 영유권 분쟁 갈등을 겪고 있어 장기적으로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축소 등을 위해 미국에 대한 대외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주요 정보

- ▶ 국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 ▶ 수도: 하노이(Ha Noi)
- ▶ 인구: 약 9,550만 명(2017년)
- ▶ 면적: 331,000km²(한반도의 약 1.5배)
- ▶ 공식어: 베트남어
- ▶ 주요 도시: 하노이, 호찌민, 하이퐁, 다낭
- ▶ GDP: 약 2,160억 달러(2017년)¹⁾
- ▶ 1인당 GDP: 2,306 달러(2017년)²⁾
- ▶ 경제성장률: 6.3%(2017)
- ▶ 화폐단위: 동(Dong, VND)
- ▶ 종교: 무교(81%), 불교(9%), 가톨릭(7%)
- ▶ 인터넷 보급률: 66.3%(2017년)



자료: 신남방정책과 아시아 주요국 진출환경,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8.7.,
베트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8.2.,
internetworldstats, 2017.12. 자료 종합

1) 본 보고서의 달러는 미 달러화를 기준으로 함

2) 100동(VND) = 4.81원(KRW)(KEB하나은행 고시 기준, 2018.12.28)

1. 수출환경 및 경제지표

□ 국가 위험등급 및 전망³⁾

D B 1 D B 2 D B 3 D B 4 D B 5 D B 6 D B 7 저위험 ← → 고위험	등급	등급전망
	DB5	긍정적

자료: 「Country Insight Snapshot Vietnam October 2018」, Dun & Bradstreet, 2018.10.12.

□ 주요 전망

구 분	세 부 내 용
긍정적	- 저렴한 인건비, 풍부한 노동력, 지리적 위치와 정치적 안정성은 외국인 투자자에 매력적으로 작용하는 요소 - 소득 수준이 향상되어 중산층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 시장이 확대될 전망
부정적	- 재정 적자로 인한 정부 지출 규모 축소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비효율적인 국영 기업의 운영과 막대한 국가 부채가 국가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고 있음

자료: 「Country Insight Snapshot Vietnam October 2018」, Dun & Bradstreet, 2018.10.12.

3) D&B의 국가위험등급은 전 세계 132개 국가를 대상으로 각 국가별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의 다양한 요소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국가별 투자 및 상거래 위험 수준을 측정한 지표임. 대/내외 안보상황, 정책의 방향성 및 지속성 등의 '정치적 환경',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율, 무역규모, 재정 및 통화정책, 재정 균형 등의 '경제 및 상업환경', 제도적 투명성, 사법체계, 계약의 준수 정도, 부패지수 등의 '사회적/ 제도적 환경' 등을 모두 반영하며, 약 9개 항목으로 구성된 국가위험지표 테이블에 따라 산출됨. 자료: D&B Country Risk Indicator, Dun & Bradstreet

□ 주요 거시경제 지표

- 2018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0.4%p 상승하며 7.2%를 기록할 전망
 - 내수 측면에서는 2016년 최저임금 인상(평균 12.4%)에 따른 민간 소비 활성화
 - 제조업 부문의 수출 호조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증가 등의 외부적 요인 또한 경제성장 견인
- 경상수지는 2016년 이후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2017년 이후로 수입 증가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된 것이 원인
- 부채상환비율⁴⁾은 3.8%를 기록하며 4% 미만의 비교적 건전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 2017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약 400억 달러에 이르는 등 당분간 대외지급능력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재정 수지는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2018년 -6.0%를 기록할 전망
 - 경제 성장과 원유 생산 등의 세수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프라와 사회 복지 부문의 재정지출로 만성적인 재정 수지 적자를 기록
 - 공공부채는 GDP 대비 60.7% 수준으로 아시아 신흥 개발도상국의 평균인 47%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
- 2018년 물가상승률은 2017년 말 전기요금 인상 여파로 4.0%를 기록할 전망
 - 이는 2017년 교통비 및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보다 증가한 수치

표 1.1 주요 거시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f	2019f	2020f	2021f	2022f
경상수지/GDP	0.5	4.1	2.8	2.8	2.6	2.8	3.0	3.0
재정수지/GDP	-6.1	-6.3	-6.0	-6.0	-5.5	-5.0	-5.0	-4.5
부채상환비율	3.8	3.9	3.9	3.8	3.8	3.8	3.8	3.8
물가상승률	0.6	2.7	3.5	4.0	4.0	4.5	4.5	4.0
경제성장률	6.7	6.2	6.8	7.2	6.5	6.0	6.0	6.0

자료: 「Country Insight Report Vietnam October 2018」, Dun & Bradstreet, 2018.9.14.

4) 부채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해당연도의 수출 대비 원금과 이자를 합친 부채를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 부채상환비율은 국가 한 국가의 부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이며 부채상환비율 전망을 도출하기 위해 수출액에 대한 전망이 필요함

□ 무역통상 환경

- 베트남 교역에서는 해외직접투자(FDI) 기업의 수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글로벌혁신지수(GII)에 따르면, 베트남의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순유입은 127개국 중 26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
 -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은 2013년 89억 달러에서 2017년 129억 달러로 증가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중
-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위해 행정 절차 간소화를 포함한 우호적 투자환경을 조성 중
 - 2017년 각종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아세안 4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의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방안 결의
 - 또한 기존 조건부 투자사업⁵⁾ 부문을 267개에서 243개로 축소했으며, 해당 행정 절차도 축소 및 간소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취약한 인프라, 부정부패, 관료주의로 인한 비효율적 행정 처리
 -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2018년 기업환경평가보고서⁶⁾'에 따르면, 베트남은 190개국 중 66위를 차지하며 전년 68위보다 두 계단 상승함
 - 그러나 여전히 비효율적인 절차로 인해 행정 처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며, 체계적인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
-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對한국 조치도 시행 중
 - 시장 개방에 따라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대거 유입되었으며, 이로 인한 산업계 경영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8건의 무역구제조치를 시행
 - 對한국 규제는 철강 및 금속 3건, 화학 2건, 식물성 기름 1건으로 총 6건임
- 2017년 1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⁷⁾을 탈퇴한 이후 베트남 정부는 대외 경제 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대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⁸⁾ 등에 참여하며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5) 일반 투자사업과 달리 외국인 투자 지분율과 상관없이 반드시 외국인 설립 절차를 받아야 하는 사업

6) 세계은행(World Bank)과 산하 기관 국제금융공사(IFC)가 매년 세계 190개국을 대상으로 창업의 용이성 등을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는 경제 지표

7)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

8)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 지대로 통합하는 ASEAN+6 FTA로, 중국이 주도하며 일본, 한국, 아세안 10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

□ 위험 및 기회 요소

구 분	세 부 내 용
위험 요소	외교적 위험 요소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상존함 • 중국은 베트남의 최대 교역국으로, 남중국해 분쟁 이후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베트남 정부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축소하고 전방위적 대외정책을 통해 국제교역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음 사회적 위험 요소 ▶ 열악한 인프라가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함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글로벌경쟁지수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프라 수준은 137개국 중 79위를 차지 • 특히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인프라의 질이 열악하여 대도시의 경우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상황
기회 요소	경제적 기회 요소 ▶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고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하며, 노동력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베트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총 인구의 50%가 30대 미만으로, 이 연령층이 향후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자 소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 2016년 12.4%의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타 아세안 국가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 • 낮은 노동생산성, 관리자금 전문인력 및 숙련노동력 부족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개발 투자를 늘리고 있음 ▶ 2017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개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됨 • 최근 신흥 개발도상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베트남은 2006년 하노이에서 APEC을 개최한 이후 2017년 11월 동 행사를 다낭에서 재개최하며 그간 달라진 경제적 위상을 입증함 • 관광산업 홍보 효과를 거두고 투자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IT, 부동산, 첨단기술 등의 분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

자료: 「Country Insight Report Vietnam October 2018」, Dun & Bradstreet, 2018.9.14.
베트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8.2. 자료 종합

2. 식품산업 현황

1) 과일 시장 동향

□ 베트남, 과일 소비와 수출입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

- 열대 및 아열대 과일 생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품종의 과일을 생산 및 수출하고 있음
 - 열대과일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용안, 리치, 밀감, 망고, 오렌지 등임
 - 첨단 재배기법 발달로 수확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그림 1.1 주요 수출 과일 예시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 베트남에서 재배되지 않는 과일인 사과, 배, 키위, 딸기, 포도 등이 주요 수입 품목임
 - 가정용은 주로 벌크로 수입되어 날개 판매가 일반적이며, 선물용은 주로 설 등의 명절에 고급 박스 포장이나 선물 바구니 형태로 판매됨
- 자국산 열대과일은 가족이나 개인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형태이며, 수입 과일은 주로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음⁹⁾
 - 저렴한 가격과 익숙함이 강점인 자국산과 달리 수입 과일의 소비 요인은 외관 및 식품 안전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9) bapsangnews.com/article/58ec5f94671b6ab976d02abd

□ 급속한 소득 향상에 따라 안전하고 신선한 수입산 과일에 대한 수요 증가

- 소득 증가에 따라 먹거리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격보다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과거에는 가격이 과일 구매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었으나, 구매력 신장으로 인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건강이 우선시되면서 신선·보존 과일 시장 규모가 커지는 추세이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중산층 인구와 맞물려 프리미엄 과실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프리미엄 과일 시장의 경우 자국산 과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까다로운 검역을 거친 수입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최근 중국산 과일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베트남 내 언론 보도로 인해 중국산 과일의 안전성 및 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
 - 소비자들의 과일 선호도는 수입산(중국 제외), 자국산, 중국산 순이며, 과거 중국산 과일이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반해 최근 몇 년간 태국산 과일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급증함
- 수입 과일 수요가 증가하여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입 과일 전문 판매점이 늘어나고 있으며, 현지 대형마트 및 영세 농산물 상점에서도 수입 과일 판매를 확대하고 있음
 - 특히 Klever Fruits나 F5 등의 고급 수입 과일 전문점은 포장 상태 및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하노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수입 과일 유통 채널로 자리매김함

그림 1.2 수입 과일 판매 체인점 'Klever-Fruits'



자료: www.kleverfruits.com.vn

□ 과일 시장 규모

- 과일 판매량은 2017년 기준 약 576백만 톤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6% 성장하였으며, 2018년 6백만 톤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3년간(2015-2017년) 약 7%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기록하였으며, 향후 3년 또한 6%대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1.2 과일 판매량 추이 및 전망(2015-2020년)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2) 딸기 시장 동향

□ 딸기 생산 및 재배 현황

- 베트남의 총 딸기 공급량은 한 해 평균 약 1,800톤이나 기후 여건에 따라 변동폭이 큼
- 딸기의 주요 생산지는 람동(Lam Dong) 지방의 달랏(Da Lat)과 썬라(Son La) 지방의 목찌우(Moc Chau) 두 곳이며, 이 중 달랏에서 대부분의 딸기가 생산되고 있음
- 달랏 지역의 경우 기존에는 주로 미국, 뉴질랜드, 프랑스 품종을 주로 재배했으나 최근 한국과 일본 딸기의 재배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
- 목찌우 지역에서는 2009년부터 딸기 재배가 시작되었으며 일본산과 호주산 두 가지 품종이 주로 재배되는데 생산량은 미미한 수준

- 람동 지방은 선진 재배기술과 품종의 다양화를 기반으로 경작시설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이어오고 있음
 - 달랏 지역의 총 딸기 경작 면적은 약 100ha이며, 2018년 기준 람동 지방의 총 딸기 생산량은 2,200톤을 상회함
 - 달랏 지역의 출하 성수기는 12월 중순부터 3월 초로 이 기간의 생산성은 1ha당 12톤이며, 그 외 기간의 생산성은 1ha당 6톤(총 공급능력은 출하 성수기에 1,200톤이며 그 외 기간은 600톤)
- 목찌우 지역의 딸기 경작 면적은 약 6ha로, 2018년 기준 50톤의 수확량을 기록하여 매출액 약 100억 동(한화 약 4억 8천만 원)을 넘어섬
 - 목찌우 지역의 출하 성수기는 3월부터 5월까지이며 공급 가능한 생산량은 달랏 지역 대비 소규모

그림 1.3 달랏과 목찌우 지역



자료: Vietnam Travel Guide

□ 딸기 판매 현황 및 전망

- 딸기의 판매량은 2017년 기준 984톤을 기록했으며, 2018년 소폭의 감소가 예상되나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 최근 3년간(2015-2017년) 성장률은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냈으나, 약 28.1%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CAGR)을 기록
- 향후 판매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약 1,300톤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표 1.3 딸기 판매량 추이 및 전망(2015-2020년)

(단위: 톤, %)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3. 수출입통계 및 생산통계

수출입통계 및 생산통계 개요

❖ 딸기 관련 주요 수치

- 글로벌 딸기 수입 규모 약 28억 8,380만 달러(2017년)
- 베트남 딸기 수입 규모 약 219만 달러, 세계 64위(2017년)
- 베트남 딸기 수입액 시장점유율 1위 한국(99.6%), 중국, 호주 순(2017년)
- 한국산 딸기의 對베트남 수출량 약 212톤, 수출액 243만 달러(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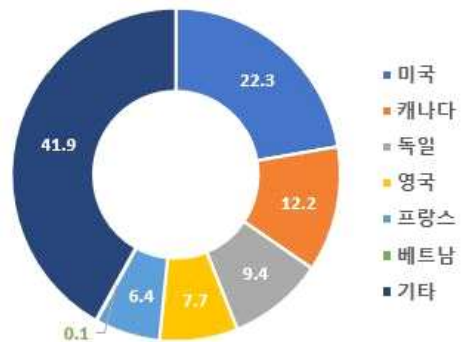
❖ 딸기의 국가별 HS CODE 분류

국가	HS CODE	품명
한국	0810.10.0000	초본류 딸기
베트남	0810.10.00	초본류 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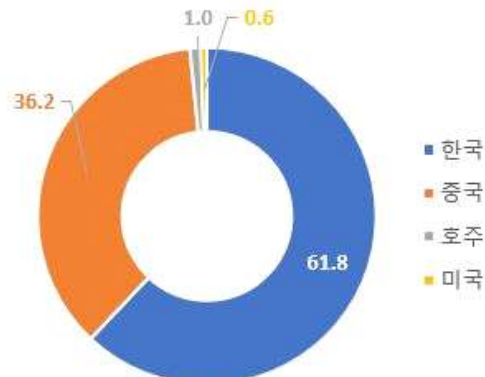
❖ 글로벌 딸기 수입액 규모(2017년)

수입국		2017년 금액(천 달러)
글로벌		2,883,805
1	미국	642,573
2	캐나다	350,903
3	독일	270,242
4	영국	221,848
5	프랑스	184,255
64	베트남	2,187

❖ 글로벌 딸기 수입액 비율(2017년)



❖ 베트남의 국가별 딸기 수입 비중(2017년)



1) 통계분석 기준 설정

□ 딸기 통계 기준 설정

- 딸기의 전 세계 및 베트남 수입 통계, 한국산 수출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HS CODE를 통계 기준으로 설정¹⁰⁾

□ 딸기의 HS CODE¹¹⁾는 한국 0810.10.0000, 베트남 0810.10.00

- 글로벌 수입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HS CODE 0810.10, 베트남 수입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HS CODE 0810.10.0000, 한국산 딸기의 수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HS CODE 0810.10.00을 통계 기준으로 설정

표 1.4 딸기 국가별 HS CODE 분류

국가	HS CODE	품명
글로벌	0810.10	초본류 딸기
한국	0810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10.0000	초본류 딸기
베트남	0810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10.00	초본류 딸기

표 1.5 HS CODE 검색 사이트

구분	사이트명	URL
HS CODE	관세법령정보포털 3.0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정보시스템	http://www.customs.go.kr/kcshome/getBuRyuList.po
	베트남 관세청	http://www.customs.gov.vn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3.0(unipass.customs.go.kr), 세계 HS 정보시스템(www.customs.go.kr)

10) 의뢰 제품의 HS CODE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간한 '2018 HS품목별 수출입통관관람'을 조회하거나,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3.0'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음

11) HS CODE는 6자리는 전세계 공통, 7-10번째 숫자는 각 나라마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10자리, 베트남은 8자리를 사용하고 있음

2) 글로벌 수입 통계(통계기준: HS CODE 0810.10)

□ 2017년 글로벌 딸기 수입 규모 1위 국가는 미국이며, 베트남은 64위

- 2017년 전 세계 딸기의 수입 규모는 총 약 28억 8,380만 달러로, 최근 5년간 (2013-2017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3.0%를 기록
 - 딸기의 최대 수입국은 미국으로 2017년 기준 약 6억 4,260만 달러를 수입하였으며, 이는 전체 글로벌 수입의 22.3%를 차지
- 2016년부터 딸기 수입 규모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7년 기준 베트남의 딸기 수입 규모는 약 218만 7,000달러로 전체의 0.1%를 차지

표 1.6 글로벌 HS CODE 0810.10 수입 규모 추이(2013-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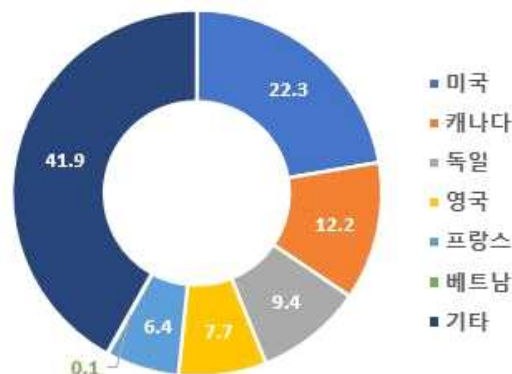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2017 연평균성장률 ¹²⁾
글로벌	2,563,013	2,585,743	2,433,239	2,637,646	2,883,805	3.0%
1 미국	330,125	389,927	413,300	559,499	642,573	18.1%
2 캐나다	351,336	342,996	316,136	330,012	350,903	0.0%
3 독일	296,936	247,873	30,893	268,229	270,242	-2.3%
4 영국	84,036	214,090	226,361	222,371	221,848	4.8%
5 프랑스	222,919	204,621	177,410	181,607	184,255	-4.7%
64 베트남	119	274	268	1,029	2,187	107.1%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표 1.7 국가별 딸기 수입액 비중(2017년)

(단위: %)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12) 연평균성장률 = (최신/최초연도)^{1/n개년}-1

3) 베트남 수입 통계(통계기준: HS CODE 0810.10.00)

□ 2017년 베트남의 딸기 수입은 한국이 대부분을 차지

- 베트남의 딸기 수입액은 2017년 기준 약 393만 9,000달러로, 전년 대비 13% 증가
- 베트남의 딸기 수입국 1위는 한국으로 2017년 기준 수입액 약 243만 달러를 기록
 - 약 140만 달러를 기록했던 2016년 대비 약 133% 증가하며, 2017년에는 약 61.8%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중국을 제치고 베트남 전체 딸기 수입 1위국으로 부상
 - 호주산 딸기에서 바늘이 나온 사건과 함께 미국산 딸기가 비위생적이라는 사실이 보도된 이후 호주산 및 미국산 딸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 감소가 수입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표 1.8 베트남 딸기 수입 규모 추이(2013-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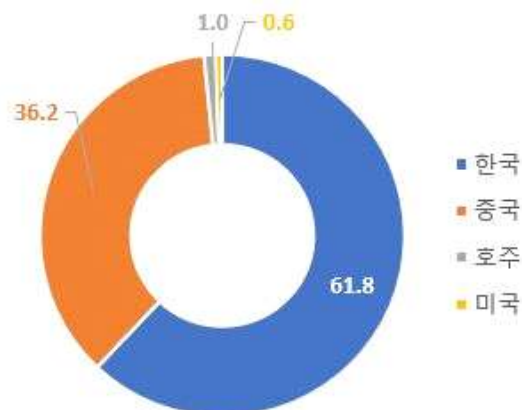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2017 연평균성장률
글로벌	271	366	2,431	3,493	3,939	95.3%
1 한국	23	20	10	1,044	2,434	220.7%
2 중국	214	1,270	2,420	2,437	1,427	60.7%
3 호주	-	5	-	3	40	-
4 미국	-	3	1	5	25	-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표 1.9 베트남의 국가별 딸기 수입 비중(2017년)

(단위: %)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 베트남의 월별 딸기 수입 통계

- 한국산 딸기는 2017년 1월부터 중국산 딸기의 수입 규모를 앞지르기 시작하였으며 주로 겨울부터 늦봄까지 수입되는 양상을 보임
 - 최근 3년간(2015-2017년) 한국산 딸기의 수입은 주로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지속되며, 2년 연속으로 12월에 가장 많은 수입량을 기록
 - 2017년 12월 약 74만 6,000달러로 역대 최고 수입 규모를 기록
- 중국산 딸기의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꾸준히 수입되는 양상을 나타내나, 2015년 1월 약 102만 7,000 달러를 기록한 이후 점차 수입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

표 1.10 베트남 딸기 주요 수입국 최근 3개년 월별 수입 규모(2015-2017년)

(단위: 천 달러)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 국	2017	321	304	399	230	77	-	-	-	-	-	357	746
	2016	12	20	150	105	7	-	-	-	-	-	58	691
	2015	-	4	3	-	-	-	-	-	-	-	3	-
중 국	2017	201	321	122	107	95	62	65	32	59	21	5	-
	2016	519	290	169	83	145	58	2	27	65	104	212	764
	2015	1,027	563	10	-	-	-	-	-	8	114	140	558
호 주	2017	0	-	-	0	-	-	-	-	-	-	-	-
	2016	-	-	-	-	-	-	-	-	-	-	-	-
	2015	-	-	-	-	-	-	-	-	-	-	-	-
미 국	2017	-	-	37	-	-	-	3	-	-	-	-	-
	2016	-	-	-	-	-	3	-	-	-	-	-	-
	2015	-	-	-	-	-	-	-	-	-	-	-	-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4) 한국 수출 통계(통계기준: HS CODE 0810.10.0000)

□ 한국산 딸기의 對글로벌 수출 규모

- 한국산 딸기의 對글로벌 수출량은 2017년 기준 약 4,790톤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36.3% 증가
- 對글로벌 수출액은 2017년 기준 약 4,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2.5% 증가

표 1.11 한국산 딸기의 對글로벌 수출 통계

(단위: 톤, 천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중량 (연 증가율)	2,815 (30.8%)	3,064 (8.8%)	3,293 (7.5%)	3,539 (7.5%)	4,787 (35.3%)
금액 (연 증가율)	28,559 (27.3%)	31,599 (10.6%)	31,971 (1.2%)	32,450 (1.5%)	42,983 (32.5%)

자료: KATI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한국산 딸기의 對베트남 수출 규모

- 한국산 딸기의 對베트남 수출량은 2017년 기준 약 212톤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36.2% 증가하는 등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임
 - 호주산 및 미국산 딸기 수입이 줄어들면서 대체재로 한국산 딸기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對베트남 수출액은 2017년 기준 약 243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33.5% 증가

표 1.12 한국산 딸기의 對베트남 수출 통계

(단위: 톤, 천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중량 (연 증가율)	2 (399.3%)	2 (△23.0%)	1 (△55.8%)	90 (11,497.2%)	212 (136.2%)
금액 (연 증가율)	23 (298.2%)	20 (△10.0%)	10 (△50.9%)	1,043 (10,375.9%)	2,434 (133.5%)

자료: KATI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II. 시장 트렌드

1. 정책 이슈
2. 제품 트렌드
3. 소비 트렌드
4. 유통 트렌드

시장 트렌드 개요

1. 정책 이슈

- ❖ 2016년 한국과 베트남 간의 딸기 검역협상 타결
- ❖ 2017년 2월부터 한국 딸기 제품은 ‘베트남용(for Vietnam)’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함

2. 제품 트렌드

- ❖ ‘치미 농장’(Chimi Farm), 다양한 수입산 딸기 품종 재배
- ❖ 달랏 소재 딸기 농장, 일본의 재배 기술을 활용한 딸기 품종으로 프리미엄 시장 타겟팅

3. 소비 트렌드

- ❖ 수입산 딸기는 주로 중상위 계층 위주로 소비되거나 특별한 날 선물용으로 인기
- ❖ 한국산이라는 브랜드와 달콤한 향과 맛으로 소비자에게 어필
- ❖ 달랏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딸기 농장 투어가 확산되는 추세
- ❖ 딸기를 선택하는 주요 기준은 신선도와 원산지이며, 한국은 선호 원산지 중 4위
- ❖ 한국산 딸기 선호도는 소득과 정비례 관계를 보임

4. 유통 트렌드

- ❖ 가격에 따라 판매 형태가 상이하며 고가의 딸기는 과일 전문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주로 판매됨
- ❖ 달랏 지역의 딸기는 미비한 운송 체계로 인해 운송비 부담이 높음
- ❖ 딸기를 비롯한 수입 과일은 수입업자가 직접 소매처에 납품하거나, 도매업자를 거쳐서 납품하는 형식의 유통 구조

1. 정책 이슈

□ 2016년 한국과 베트남 간의 딸기 검역협상 타결¹³⁾

- 현재 베트남으로 수출 가능한 한국산 신선 과실류는 검역 등의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배, 사과, 포도, 딸기의 4개 품목으로 제한
 - 2016년 2월, 베트남 식물검역 당국과 한국산 딸기의 베트남 수출 검역 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한국산 딸기의 베트남 수출·판매가 본격 개시됨
 - 베트남 검역 당국은 특정 식물병해충 관리에 관한 엄격한 규정 준수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정한 베트남 딸기 수출 단지에서 재배된 상품에 한해서만 베트남 수출을 허용

□ 2017년 2월부터 한국 딸기 제품은 ‘베트남용(for Vietnam)’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함¹⁴⁾

- 2017년 2월 16일 베트남 식물보호부(Plant Protection Department)는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딸기 제품은 모두 ‘베트남용(for Vietnam)’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함을 발표
 - 포장에는 생산 및 포장 시설의 이름 또는 등록 코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제품 트렌드

□ ‘치미 농장’(Chimi Farm), 다양한 수입산 딸기 품종 재배¹⁵⁾

- 목찌우(Moc Chau)에 위치한 치미 농장은 한국, 일본, 뉴질랜드, 미국의 딸기를 재배, 유통하고 있으며, 수입산 딸기의 프리미엄 가치와 맛, 외관을 강조
 - 한국 딸기는 가장 인기 있는 품종으로, 명절이나 기념일을 위한 선물로 주로 판매되며 일본 딸기는 온실 재배에 따른 엄격한 위생기준 적용으로 식품 안전성을 강점으로 함
 - 뉴질랜드 딸기는 전용 하우스 내부에 토양 없이 양액을 첨가한 물에서 키우는 방식인 수경법으로 재배됨
 - 미국 딸기는 심장 모양과 단단한 열매가 특징인데, 옥외에서 재배하여 한국이나 일본 딸기보다 품질이 낮음

13) 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80396&menu_dept2=35&menu_dept3=71

14) vietnamnews.vn/economy/351401/rok-strawberry-imports-face-new-rules.html#LC1MrogYJ8jEeYvg.97

15) chimi.com.vn/diem-danh-mot-so-loai-dau-tay-ngon-nhat-hien-nay/

그림 2.1 치미 농장의 딸기 제품



자료: hchimi.com.vn/diem-danh-mot-so-loai-dau-tay-ngon-nhat-hien-nay/

□ 달랏 소재 딸기 농장, 일본의 재배 기술을 활용한 딸기 품종으로 프리미엄 시장 타겟팅¹⁶⁾

- 달랏 지역에 위치한 ‘크리에이트 스타 베트남(Create Star Vietnam)’의 딸기 농장은 프리미엄 딸기 시장을 타겟으로 일본산 딸기 재배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랍동시 농산물 조사 프로젝트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고품질의 딸기와 100% 일본산 품종을 사용하고 있음
 - 온실에는 적정 실내 온도 조절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등 일본의 첨단 재배 기술 및 재배 방식을 사용하여 일반 딸기 재배 방식과 차별화
- 호치민에 위치한 레스토랑에도 딸기를 공급

16) bnews.vn/mo-hinh-dau-tay-cong-nghe-nhat-ban-tai-da-lat-hut-khach-du-lich/36437.html

3. 소비 트렌드

□ 수입산 딸기는 주로 중상위 계층 위주로 소비되거나 특별한 날 선물용으로 인기

- 수입산 딸기는 비교적 높은 판매가격으로 중상위 소득 계층 위주로 소비가 이루어짐
 - 중산층 증가에 따라 딸기 소비도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상황
 - 주요 소비층은 대도시 거주 부유층 및 교민에 한정되어 있으며, 지역별로는 호치민보다 하노이의 프리미엄 수입 과일 전문점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 일반적으로는 명절이나 기념일의 선물용으로 소비됨¹⁷⁾
 - 매년 음력 설 명절인 텃(Tet) 기간에 프리미엄 과일이 바구니나 선물 포장 등을 가미한 고급스러운 외관을 지닌 선물용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평소의 10배에 가까운 물량이 판매되기도 함

□ 한국 딸기, 한국산이라는 브랜드와 달콤한 향과 맛으로 소비자에게 어필

-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높아 한국이라는 원산지에 대해 기본적인 신뢰가 형성되어 있음
 - 한류의 인기가 높아지며 한국 드라마에서 딸기 먹는 장면을 보고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는 추세
- 한국 딸기는 베트남산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높지만 오히려 베트남산보다 품질이 우수하다는 인식이 존재하며 맛이 뛰어나 인기가 높음
 - 베트남산 딸기는 단맛이 적고 신맛이 강한 편이라 시럽에 찍어 먹거나 샐러드, 음료 등의 재료로 주로 소비됨
 - 반면, 한국 딸기는 베트남산과 달리 달콤한 맛과 향으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음
 - 특히 한국산 매향 딸기¹⁸⁾는 미국산, 호주산과 가격이 비슷하지만 향이나 당도 면에서 우수하다는 인식이 강해 수입산 중에서도 차별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음

17) weeklytrade.co.kr/news/view.html?category=136&no=34900§ion=1

18) 1997년 한국 논산딸기시험장에서 개발된 품종

□ 달랏 지역에서 국내외 여행객을 위한 딸기 농장 투어가 증가하는 추세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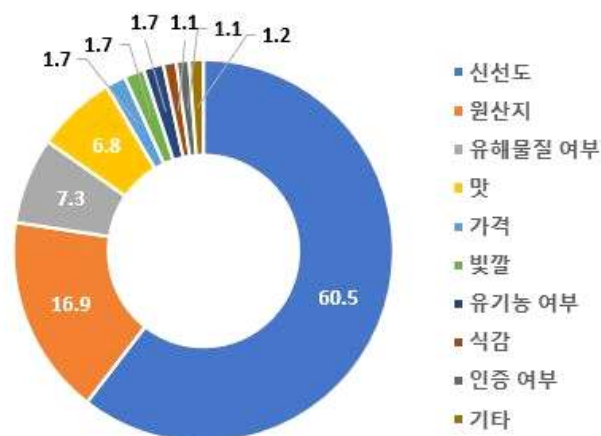
- 베트남 지역문화체육관광부는 딸기 농장을 하나의 새로운 문화의 등장으로 간주하며 달랏 지역의 딸기 농장 관광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
 - 농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딸기 재배 과정 및 기술과 관리법 등 딸기 재배 전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관광 시스템을 구축 및 지원하겠다고 밝힘
- 한국 딸기의 인기가 높아지며 베트남 내 한국 딸기 농장도 관광지화되는 추세
 - 달랏에 위치한 한국 딸기 농장에 호치민 등의 대도시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늘어나 딸기 농장 관광 및 산지에서 활발한 딸기 구매가 이루어짐
 - 인기있는 농장의 경우 호치민 등 대도시에서 들어오는 주문 물량보다 산지 판매 비율이 높아져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함

□ 딸기를 선택하는 주요 기준은 신선도와 원산지이며, 한국은 선호 원산지 중 4위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2016년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소비자들이 딸기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신선도이며 그 다음으로 원산지와 유해물질 검출 여부가 뒤를 따름
 -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0.5%가 신선도를 선택하였고, 원산지를 선택한 비율은 16.9%, 유해물질 검출 여부는 7.3%, 맛은 6.8%를 차지

표 2.1 딸기 선택 기준 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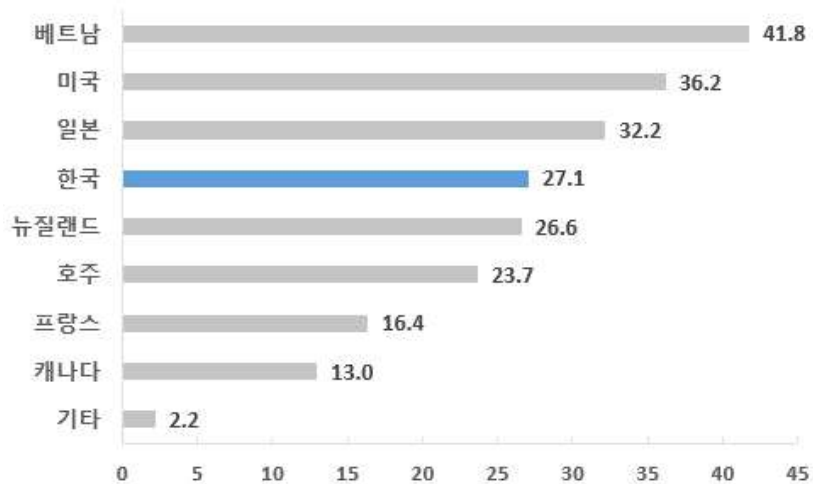
자료: 2016 검역타결품목 조사 딸기 베트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7.02.

19) english.vietnamnet.vn/fms/travel/110144/strawberry-farm-in-da-lat---fresh-tour-tickled-pink.html

- 딸기 구매 경험자가 가장 선호하는 원산지는 베트남이었으며 다음으로 미국, 일본, 한국이 각각 36.2%, 32.2%, 27.1%로 상위권을 차지

표 2.2 선호하는 딸기 원산지 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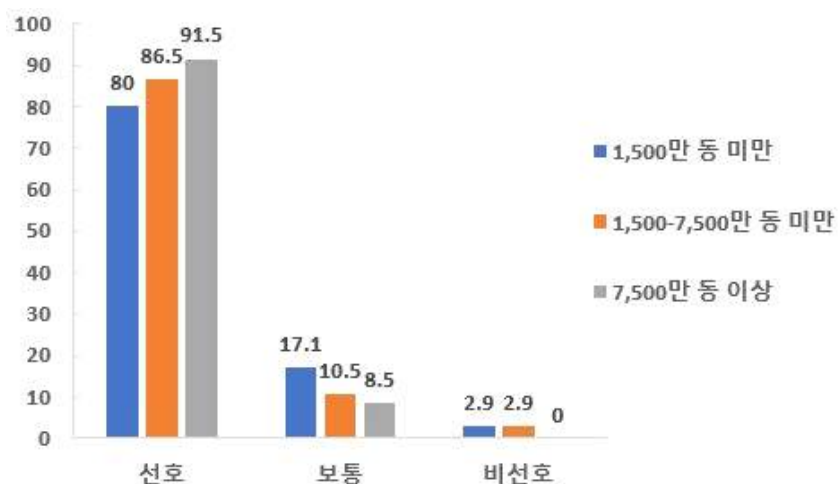
자료: 2016 검역타결품목 조사 딸기 베트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7.02.

□ 한국산 딸기 선호도는 소득과 정비례 관계를 보임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2016년 실시한 한국산 딸기에 관한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 한국산 딸기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월 평균 소득이 1,500만 동(한화 약 72만 원) 미만일 경우 '선호'가 80%, '비선호'가 2.9%였으며 7,500만 동(한화 약 360만 원) 이상일 경우 각각 91.5%, 0%로 나타남

표 2.3 월 평균 소득에 따른 한국산 딸기 선호도

(단위: %)



자료: 2016 검역타결품목 조사 딸기 베트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7.02.

4. 유통 트렌드

□ 가격에 따라 상이한 딸기 판매 형태 및 유통채널 현황

- 고가 수입 과일은 과일 전문점이나 슈퍼마켓에서 등에서 주로 판매되는 형태
 - 고가 품목인 딸기의 경우 주로 과일 전문점(Klever Fruits, F5, Fuji Fruits 등)이나 대형마트(Big C, Megamart), 동네 중형마트(Vinmart, FIVI mart) 등에서 판매
 - 과일 전문점의 경우 과일의 품질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주로 포장된 상태의 과일을 실온 및 냉장 매대에서 판매
 - Big C는 대표적인 대형마트 체인 중 하나로, 특정 유통업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특징임
 - 슈퍼마켓 체인 Vinmart는 중산층이 주 소비층이며, 실온 매대의 경우 무게를 달아 판매하고 냉장 매대에서는 소포장 형태로 판매

그림 2.2 과일 전문점 및 슈퍼마켓



- 자국산 저가 과일의 경우 수입산과 달리 재래시장에서 주로 판매됨
 - 주로 유통업자가 수확기 또는 그 이전에 농장에서 직접 구입하여 자국산 과일 도매업자에게 판매
 - 자국산 딸기 가격은 유통 채널과 시기별로 차이가 나지만 미국산과는 비슷한 가격에, 호주산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소매시장에서 판매됨

□ 달랏 지역의 딸기는 운송 체제 미비로 인해 높은 가격에 운송됨²⁰⁾

-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베트남의 물류 비용은 전체 GDP의 21%를 차지하며 이는 아시아 국가의 평균인 13.5%를 훨씬 웃도는 수치
 - 도매업자는 운송비 상승으로 딸기 값이 오르자 매입 원가를 절감하려 해 생산자가 손해를 보는 실정
 - 베트남운송협회(The Viet Nam Logistics Association)는 높은 운송 비용의 원인으로 연료비(30~35%), 교통비(15%), 공안뇌물비(5%)을 꼽음
- 화물 열차 및 해상 운송 체제가 미비하여 남부의 달랏에서 북부의 하노이로 딸기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높은 가격의 항공 운송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함
 - 농산물을 신선한 상태로 배송하기 위해서는 운송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수인데, 화물 열차의 경우 운송 기간이 며칠 이상 소요되며 냉장 보관 가능한 컨테이너가 부족한 실정
 - 이에 딸기 수요가 높은 북부에서 딸기를 구입할 경우 높은 항공 운송비로 인하여 원가의 최소 35% 이상을 운송비가 차지하게 됨

그림 2.3 달랏과 하노이 간 운송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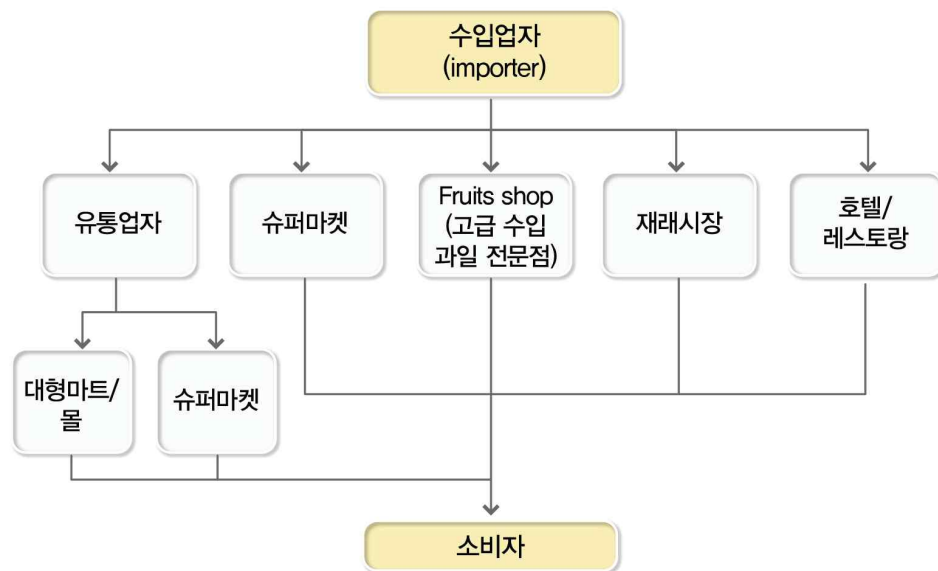
자료: Vietnam Travel Guide

20) english.vietnamnet.vn/fms/society/201170/logistics-costs-hamstring-agricultural-businesses.html

□ 딸기를 비롯한 수입 과일의 유통구조

- 딸기를 비롯한 수입 과일은 수입업자가 직접 소매처에 납품하거나, 도매업자를 거쳐서 납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 Big C 등 체인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의 경우 특정 유통업체와 계약하여 해당 업체에서만 납품받는 구조

그림 2.4 수입 과일 유통 구조



자료: 2016 검역타결품목 조사 딸기 베트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7.02.

- 딸기의 경우 현지 수입업자들이 공급업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급업자 측에서 먼저 접촉하는 방식을 선호함
- 딸기 수입은 주로 2FM, V-Food, Hoa Canh Cao Nguyen, Vita Fruits 등에서 주도하고 있음



Ⅲ. 통관 및 제도

1. 통관 및 검역
2. 인증정보
3. 라벨링
4. 위생요건

통관 및 제도 개요

❖ 수입통관 절차

베트남에서 딸기를 수입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입통관이 이루어짐

번호	절차	주요 내용	관할 기관
1	수출단지 등록	- 베트남 수출용 딸기 온실 및 선과장 등록과 사전 관리 - 온실목록 베트남 식물검역 당국에 제출(농림축산검역본부)	-
2	수출 검사	- 샘플 추출 -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농림축산검역본부
3	수입 신고	- 수입 신고 - 필요서류 제출	베트남 산업무역부 관할 세관
4	검사 및 검역	- 검사 절차	베트남 식물검역당국(PPD)
5	관세 납부	- 관세 등 납부 - 품목에 따라 특별소비세 부과	관할 세관
6	물품 반출	- 수출관세,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환금 대상 - 관세는 관세청, 부가가치세는 세무국에 신청	관세청 사무국

❖ 베트남 HS CODE 0810.10.00 관세율

HS CODE	구 분	관세율	원산지 기준
0810.10.00 (초본류 딸기)	최혜국 (Most favored nation, MFN)	15%	-
	한-ASEAN 무역협정 (AKFTA)	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한-베트남 무역협정 (VKFTA)	0%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부가가치세 정보

부가세(Value Added Tax) 10% 부과

수입자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함께 납부해야 통관이 완료됨

❖ 베트남 관세율 확인 방법

- 1) '관세법령정보포털 3.0 > 세계 HS > 관세율표'에서 베트남을 선택한 후 확인하고자 하는 품목의 HS Code를 입력하면, 해당 품목의 관세율 확인 가능
- 2) '통합무역정보서비스(www.tradenavi.or.kr) > FTA/관세 > 통합관세비교(한국 FTA 기준)'에서 FTA 협정 정보, 관세율, 원산지 기준 확인 가능
- 3) 해당 HS CODE에 대한 관세율을 베트남 관세청에서 직접 확인하려면 베트남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www.customs.gov.vn) 조회 가능

분류	기관 사이트명	URL
관세율	관세법령정보포털 3.0	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통합무역정보서비스	www.tradenavi.or.kr
	베트남 관세청	www.customs.gov.vn

❖ 인증정보

인증명	발행기관	성격	내용
ISO 22000	한국표준협회	권장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위해 요소를 사전 예방 및 관리
HACCP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등	권장	식품의 미생물 오염 등 위험을 방지 하고 식품의 안전 확보가 목적

❖ 라벨링

- 2017년 4월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내 수입·유통되는 제품들에 대한 신 라벨링 규정(Decree 43/2017/ND-CP)을 공포
- 상품명, 상품을 책임지는 개인 혹은 단체의 명칭과 주소, 상품의 원산지, 주소,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야 함

❖ 위생규정

- 딸기는 식품첨가물 허용기준(05/2018-TT-BYT)에서 규제하는 대상에 미해당
- 식품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No.46/2007/QĐ-BYT)에서 잔류 농약 허용기준, 미생물 오염 허용기준, 중금속 오염 허용기준, 곰팡이 독소 오염 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1. 통관 및 검역

1) 수출입 통관 절차

- 베트남에서 딸기를 수입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입통관이 이루어짐

그림 3.1 베트남 딸기 수입 절차



☐ 수출단지 등록

- 베트남 수출용 딸기 생과실을 생산하는 온실(이하 수출 온실)과 선과장(이하 수출 선과장) 소유자는 수출용 온실과 선과장을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해야 함

☐ 수출 검사

- 한국 식물검역관은 수출 물량의 2%에 대해 임의로 샘플을 추출하여 수출 검사를 실시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해 '이 화물은 베트남 수입요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흙 및 식물성 잔재물과 잎 및 베트남측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부기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함

☐ 수입 신고

- 수입신고는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로 진행되며 물품을 하역하는 항만의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

- 통관을 대행해 주는 관세사가 존재하나 거의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주로 물류업체나 업체 전담 직원을 통해 통관을 진행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음

표 3.1 수입 신고 시 제출서류 목록

구분	내용
1	수입허가증
2	원산지 증명서(FTA 세율 적용 위한 필수 서류)
3	수출계약서
4	세관신고서
5	선하증권(Bill of Lading)
6	화물보관 해제주문서(Cargo Release Order)
7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8	포장명세서(Packing List)
9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와 기타 세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 o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의 시행 세칙에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신고 전, 물품 하역 전에 자동수입허가(Automatic Import Licensing, AIL)²¹⁾를 받아야 함
 - 딸기의 경우 자동수입허가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 검사 및 검역

- o 베트남 보건부의 시행령 No.38/2012/ND-CP 제 14조에 따라 공포한 「위생 및 안전성 감사가 의무화된 HS Code별 수입식품에 관한 결정 No.818/QD-BYR」은 13개 품목을 수입검역이나 검사가 필요한 품목으로 정함
 - 원칙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식자재,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식품포장용구, 식품포장재, 식품용기는 검사의 대상
 - 단, 개인이 휴대하는 관세 면제 범위 내의 자가소비용 식품, 외교관·영사관의 수하물에 포함된 식품,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전시회 참가 등),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식품, 시험용·연구용 식품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
- o 딸기의 경우 베트남 수입 시 식물검역 대상에 해당되므로 수출자는 사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하는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ion)를 준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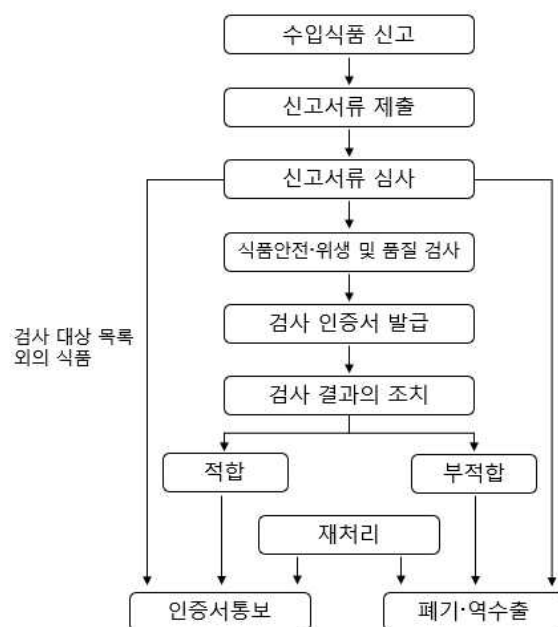
21) 베트남 산업통상부의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화장품, 특정 플라스틱 제품, 도자·유리 제품, 철강 제품, 기계 및 전자 제품, 차량, 가구류, 수산물, 각종 조제 식료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전, 물품의 하역 전에 자동수입허가(AIL)를 받아야 함

- 해당 서류를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에 제출하고 해당 화물의 일치 여부를 서류심사한 뒤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함
- o 세관에서는 화물 송장 등의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하며, 물품 검사는 보통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와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고 특송업체 (FedEx, UPS, DHL 등)를 이용하여 문전 배송되는 품목의 경우 세관원이 현장에 파견되어 검사
- 필수 검사/규격/인증을 받아 수입·판매되는 경우는 베트남 정부에서 지정하는 검사소에서 샘플을 검사한 후 적격 여부 판정
- o 수입 신고 후 세관검사에서는 물품 위험도에 따라 Green Channel(저위험), Yellow Channel(중위험), Red Channel(고위험) 등 3가지로 분류

표 3.2 위험도에 따른 세관 분류와 심사 절차

분류		심사 절차
Green Channel(저위험 물품)		세관 서류심사 및 물품 검사 면제
Yellow Channel(중위험 물품)	E-Yellow Channel	E-Document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Paper-Yellow channel	종이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Red Channel(고위험 물품)		종이 서류 제출 및 수입 물품 실제 검사

그림 3.2 검사 및 검역 절차



- 농산물, 수산물 등 특정 품목 또는 장기간 통관 기록이 우수한 수출가공지역의 경우
검사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 일반 통관의 경우 10% 샘플 검사를 해야 하며 통관/관세법 절차 위반 전력이 있
는 수입자의 경우 전수 조사를 실시

□ 관세 납부

- 기본 관세율은 ASEAN 각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로, WTO 회원국 및 최혜국 대우 지위를 획득한 모든 국가에 차등 없이 공통적으로
부과하는 세율
 - ASEAN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되어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
는 물품이더라도, 원산지 증명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 관세율이 적
용됨
- 딸기는 HS CODE 제 0810.10.00의 관세율이 적용됨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을 통해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FTA 세율의 경우
한국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 TradeNAVI'의 FTA/관세 메뉴를 활용하여 조
회할 수 있음
 -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율 확인 가능
- 베트남에서 본 물품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15%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한-베트
남 FTA나 한-아세안 FTA 협정을 적용하는 경우 0%의 세율이 부과되므로 FTA 협
정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함
 - 다만, 원산지 결정기준과 직접운송기준을 충족하고 특혜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수입자가 세율이나 원산지 결정기준 등 유리한 협정 조
건을 인지하여야 함

표 3.3 베트남 딸기 HS CODE 및 관세율

HS CODE	품명(국문)	품명(영문)	관세율
0810	그 밖의 과실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Other fruit, fresh	- 기본 세율: 15% -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0% -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 0%
0810.10.00	초본류 딸기	Strawberries	

그림 3.3 베트남 현지적용 관세율 안내 예시

Home > Public services > Tariff Database

DESCRIPTION

Section II
Section description
Chapter 08
Chapter description
HS Code 08101000
Description - Strawberries

DETAILS

Tariff	Tax rate (%)	Effective Date	Legal Document	Changes
Favour	15	01/01/2018	125/2017/NĐ-CP	View
FTAs:				
ASEAN (ATIGA)	0	01/01/2018	156/2017/NĐ-CP	View
ASEAN - China (ACFTA)	0	01/01/2018	153/2017/NĐ-CP	View
ASEAN - Korea (AKFTA)	0	01/01/2018	157/2017/NĐ-CP	View
ASEAN - Japan (AJCEP)	0	01/04/2018	160/2017/NĐ-CP	View
Vietnam - Japan (VJEPA)	1	01/04/2018	155/2017/NĐ-CP	View
ASEAN - Australia - New Zealand (AANZFTA)	0	01/01/2018	158/2017/NĐ-CP	View
ASEAN - India (AIFTA)	5	01/01/2018	159/2017/NĐ-CP	View
Vietnam - Chile (VCFTA)	8	01/01/2018	154/2017/NĐ-CP	View

Public Services: VNACCS user registration for private sector, Questions and Answers, Tariff Search, Exchange Rates, Legal Documents, Customs Trade Statistics

자료: www.customs.gov.vn

□ 물품 반출

- 물품은 수입자 등에 의해 작성된 납세신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 생략 (Paperless)으로 처리되고 반출됨
 - 납세신고서가 처리되고 예정 관세액을 납부한 후 물품 반출
 - 신고된 품목 분류, 과세 가격, 납부 세액, FTA 원산지 증명 등에 대한 사후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음

2) FTA 정보

□ 베트남 FTA 특이사항 및 한-ASEAN FTA 개요

-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AKFTA)와 한-베트남 FTA(VKFTA) 두 가지를 체결하여 물품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함
 - 두 FTA가 양허하는 내용이 상이하며 품목에 따라 특정 FTA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허 대상 품목 및 세율을 확인 후 유리한 협정을 적용해야 함
- 한-아세안 FTA는 2007년 6월 1일에 발효되어, FTA 발효에 따라 한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ASEAN 각 회원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양허 유형에 따라 협정 발효와 동시에 철폐되거나 또는 인하 스케줄에 따라 순차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됨
- 한-베트남 FTA는 기존 한-아세안 FTA의 낮은 개방도와 복잡한 원산지증명절차 문제로 인해 저조했던 FTA 활용률을 높이고자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됨
 - 상품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무역 촉진적인 규범을 도입

□ FTA 원산지 기준²²⁾을 충족하는 FTA 협정세율 적용 요건

- 한-아세안 FTA는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가 이루어지며, 협정문 또는 원산지 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FTA 협정 세율을 적용받아 수입 물품에 대해 무관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FTA 협정세율은 수입 신고 시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한-아세안 FTA), 1년 이내(한-베트남 FTA) 사후 적용도 가능
- FTA 협정세율은 WTO 양허세율(MFN)의 예외로서, FTA 체결국 간에는 양국 간 협상 결과에 따라 MFN보다 낮은 FTA 협정 세율을 우선적으로 상호 적용할 수 있음
- 수입 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베트남 세관에 제출하여 협정 세율 적용 가능

22) 교역제품의 국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어떤 물품이 한 나라에서 전적으로 생산되는 경우 당해 생산국을 원산지로 함은 기준인 완전생산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상이한 제품으로 만들어 세번(稅番)이 변경되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세번변경기준(CTH : change of tariff heading), 생산국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해야 인정하는 부가가치기준(RVC : regional value contents), 특정한 생산공정이 수행돼야 인정하는 가공공정기준 등이 있음

표 3.4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구비서류

구분	내용
1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2	B/L(선하증권) 또는 AWB(항공화물운송장)
3	Packing List
4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5	(필요시) 해당 원산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원산지증명서 등)

- o FTA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①원산지 결정기준과 ②직접운송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③FTA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베트남 딸기 HS Code의 원산지 결정 기준(PSR)은 다음과 같음

표 3.5 위험도에 따른 세관 분류와 통관 및 심사 절차

FTA 협정	HS 코드	원산지 결정 기준(PSR)
한-ASEAN FTA	0810.1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한-베트남 FTA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직접운송기준에 따라 계약 상대국이 아닌 제3국을 경유하거나, 제3국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계약상대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음

표 3.6 직접운송 기준

구분	내용
개념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인 경우에도 계약 상대국이 아닌 제3국을 경유하거나, 제3국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계약상대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음
유의사항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 당사국으로 운송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직접운송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입증 책임은 특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에게 있으며, 제3국 경유가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이며 제3국에서 추가 가공이 없었음 등을 입증해야 함 - 입증서류로는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 원본, 그 밖에 경유국 세관당국에서 발행한 입증서류 등이 있음 - 다만 이러한 서류들은 사후 입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3국 경유 시 입증 서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

-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수입국에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관 시 제출

표 3.7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구분	내용
발급기관	대한민국 세관,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청 온라인 발급
필요서류	-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 가능)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최종수출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 - 원산지소명서
처리기간	a)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함) 이내 b) 위 제1호 외의 경우: 3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함) 이내
신청방법	위의 필요서류를 구비한 후 아래의 주소에 접속하여 신청가능 - 세관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 -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cert.korcham.net/)
유효기간	1년
사용회수	1회 사용원칙(분할사용가능)

2. 인증정보

1) 필수 인증

- 2016년 체결된 '한국산 딸기의 베트남 수입요건' 충족 및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출단지에 대한 관리를 받으면 별도의 인증은 요구되지 않음

2) 권장 인증

□ ISO 22000²³⁾

- 인증 신청은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FAX로 송부하여 접수

인증 로고	
인증/검사명	ISO 22000
인증 설명	식품공급사슬 내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적용할 수 있는 국제규격이며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HACCP의 7원칙과 12절차를 모두 포함
발행/검사기관	한국표준협회(KSA), 한국품질보증원
성격	권장
제출 서류	인증심사 신청서(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
비용	기본 심사 수수료(약 106만 원)
소요 기간	직원 수에 따라 인증 심사일수 상이
유효 기간	3년(이후 3년 단위로 갱신)
인증 절차	문의신청 → 예비심사 → 문서 심사 → 현장 심사 → 인증심의 → 인증서 발행 등록 → 사후관리 심사
유의 사항	- ISO 22000은 국제 표준의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으로, 유통의 중간 식품 공급망을 관리하여 규정하고 있음 - 식품 공급망 전반에 걸쳐 장비, 포장재, 세척제, 식품 첨가제, 원료 등의 상호 관계가 있는 기업들을 비롯해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국제 표준으로 식품과 관련된 모든 기업에 적용 가능함

23) 한국품질보증원, NQA, Biz Care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²⁴⁾

인증 로고	
인증/검사명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인증 설명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차단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
발행/검사기관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등 ²⁵⁾
성격	권장
제출 서류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2. 영업자, 종업원 또는 농업인의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1부 3. 최근 3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 4. 위생관리 프로그램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1부 5.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1부
비용	수수료 20만 원
소요 기간	1년 전후
유효 기간	3년(유효기간 이내 재심사 신청 필요)
인증 절차	1. HACCP 시스템 수립을 위한 생산, 기술, 설계, 연구 및 개발 등의 부서 대표자를 포함한 프로젝트팀 구성 2. 제품의 구성, 보관, 포장상태, 사용방법 등 나타내는 제품 기술서와 생산 공정 흐름도를 작성 3. 생산공정의 각 단계와 도출된 유해요소를 파악하여 유해요소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 결과의 심각성에 근거해 위험을 평가 4. 식품안전을 위해 관리가 요구되는 중요 관리점(CCP, Critical Control Points) 선정하여 식품안전을 위한 일반 관리 사항(POA)을 파악 5. 모든 위해요소의 관리가 기준치 설정대로 충분히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한계치 설정 6. 모니터링을 하며 서류기록을 한 뒤 지속적인 개선조치

24)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25) 검사항목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은 다음 식약청 홈페이지 참고:

mfds.go.kr/brd/m_627/view.do?seq=3237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3. 라벨링

□ 라벨링 관련 법률 및 규정

-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상품 및 수입 상품의 라벨에 대하여 관리하고, 라벨의 내용 및 작성법에 대하여 규정
 - 다음의 물품은 이 시행령의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구분	내 용
1	부동산
2	일시 수입 후 재수출하는 물품, 상품무역 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여하기 위해 일시 수입 후 재수출하는 물품, 국경 통과 물품, 재수출 물품, 환적 물품
3	출입국자의 수화물, 유동자산
4	경매로 판매하기 위해 물수된 물품
5	포장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신선식품, 날식품, 가공식품
6	포장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연료, 원료(농산, 수산, 광산), 건축자재(벽돌, 기와, 석회, 모래, 돌, 자갈, 시멘트, 황토, 모르타르, 콘크리트 혼합물), 폐기물(생산, 사업 중 발생하는 것)
7	포장하지 않고 컨테이너, 레미콘에 담긴 유류, 액화가스(LPG, CNG, LNG), 시멘트
8	중고품
9	베트남에서 소비되지 않는 수출품
10	안보, 국방 영역에 해당하는 물품, 방사성 물질, 재난, 질병 극복을 위해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는 물품, 철도, 수로, 항로의 교통수단

- 2017년 4월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내 수입·유통되는 제품들에 대한 신 라벨링 규정 (Decree 43/2017/ND-CP)을 공포
 - 이는 이전 라벨링 규정인 Decree 89/2006/ND-CP(이하 Decree 89)를 대체하며, 주요 제품정보가 빠진 라벨지가 부착된 모조품이 성행되는 것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
 - 해당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2년간(2019년 6월 1일 이전) 유예 기간을 적용하기로 함
 - 2017년 6월 1일(해당 발효일) 이전에 생산·수입·유통되어 기존 규정(Decree 89)에 따라 라벨을 부착한 제품들의 경우 라벨 상의 유통기한까지 유통을 허가

표 3.8 라벨링 규정 주요 내용

구분	세부 사항
적용 대상	베트남에서 상품을 생산, 거래하는 개인 및 단체, 상품을 수입하는 개인 및 단체에 적용
의무 사항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상품 및 수입 상품은 이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라벨을 부착해야 함
위치	- 상품의 라벨은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에 부착해야 하고, 라벨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되어야 하며 상품 일부가 분리되지 않아야 함 - 외부 포장을 열 수 없거나 열면 안 되는 경우에는 외부 포장면 위에 라벨이 위치해야 하며 그 라벨에는 필수 내용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크기	상품의 라벨 기재에 책임이 있는 개인, 단체는 라벨의 크기, 라벨에 표현되는 글자와 숫자의 크기를 자체적으로 확인 및 기재해야 하며 다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상품의 라벨링 필수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글자와 숫자의 크기가 도량형 단위로 측정되어 표현되는 경우 ‘도량형법’ 제 04/2011/QH13호 규정에 따라야 함 - 상품이 식품, 식품첨가물, 포장된 식품의 가공 보조 물질인 경우 라벨에 기재되는 필수 내용의 글자 높이는 1.2mm보다 낮아서는 안 됨. 라벨을 기재하는 상품의 면이 80cm²(봉합 부분을 제외한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도 글자 높이는 0.9mm보다 작아서는 안 됨
색상	상품의 라벨에 기재된 문자, 숫자, 그림, 사진, 부호, 기호의 색은 뚜렷해야 하며 규정에 따른 필수 내용인 문자, 숫자의 색은 상품의 라벨 배경색상과 대조되는 색이어야 함
표기 언어	- 상품 라벨의 필수 내용은 베트남어로 기재해야 함.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인체에 사용되는 약품의 베트남명이 없는 경우 그 약품의 국제적 명칭 또는 과학명 • 화학 공식, 화학물질의 구조식, 약품, 약재, 약품 성분이 포함된 국제적 명칭 또는 과학명 • 베트남어로 번역할 수 없거나 베트남어로 번역 후 의미 전달이 불가능한 상품의 성분 • 성분별 중량의 국제적 명칭 또는 과학명 • 상품의 생산에 관련된 외국 기업의 명칭과 주소 - 베트남 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하는 상품의 경우 라벨의 필수 내용으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라벨에 외국어로 표시할 수 있음. 단, 외국어로 표시하는 내용은 베트남어로 표시할 때의 내용과 같아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글자의 크기는 베트남어로 작성된 내용의 글자 크기보다 더 커서는 안 됨 - 베트남으로 수입된 상품 중 라벨에 베트남어로 필수 내용이 아직 표시되지 않거나 충분한 내용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베트남어로 필수 내용이 나타나도록 별도의 라벨을 추가해야 하며, 본래의 라벨 또한 그대로 유지해야 함. 베트남어로 표시하는 내용은 본래의 라벨링에 상응하는 내용이어야 함

자료: Decree 43/2017/ND-CP, 베트남 관세청

- o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상품은 다음의 내용을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식품의 경우 추가적으로 상품의 특성에 따른 라벨링 필수표시사항을 해당 상품에 기재하여야 함

표 3.9 라벨링 필수표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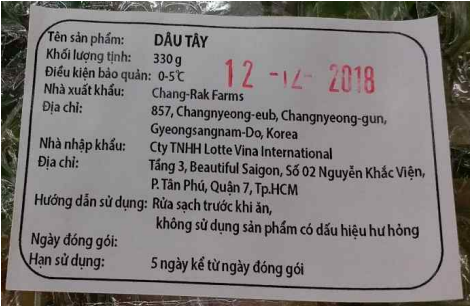
구분	종류	세부 사항
상품의 라벨링 표시사항	상품명	- 상품의 라벨에 표기되는 상품명은 눈에 쉽게 띄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가독성이 높아야 함 - 상품명은 상품의 라벨에 표기되는 다른 내용보다 더 큰 크기로 표기되어야 함 - 상품을 생산하는 개인, 단체는 라벨에 기재되는 상품명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해당 상품의 본질, 효능, 성분에 관하여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상품명은 사용할 수 없음
	상품을 책임지는 개인, 단체의 명칭과 주소	- 상품의 라벨에 기재되는 개인, 단체의 명칭과 주소는 약자로 쓸 수 없음 -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경우 그 상품을 생산한 개인, 단체의 명칭과 생산시설의 주소를 기재 - 베트남에서 유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상품의 경우 그 상품을 생산한 개인, 단체의 명칭과 주소 그리고 그 상품을 수입한 개인,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 - 특정 개인, 단체로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업 허가를 받은 상품의 경우 위 조항에 따라 상품을 책임지는 개인,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함은 물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명칭과 주소도 기재해야 함 - 개인, 단체가 조립, 포장, 봉인하는 경우 그 조립, 포장, 봉인한 개인,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라벨에 기재하여야 하며, 조립, 포장, 봉인 전에 해당 상품을 생산한 개인, 단체의 허락을 받은 뒤 그 개인, 단체의 명칭 또는 명칭과 주소, 그리고 기타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상품의 원산지	- 상품을 제조, 수입하는 개인, 단체는 자체적으로 상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기재하여야 하며, 상품 원산지에 관한 법률 또는 베트남이 참여 또는 체결한 협정을 정확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 원산지를 기재하는 방법은 “~에서 생산(sản xuất tại)” 또는 “~에서 제조(chế tạo tại)”, “생산국

		(nước sản xuất)”, “원산지(xuất xứ)” 또는 그 상품의 생산 국가명 또는 지역명이 포함된 “~생산(sản xuất bởi)”의 형식으로 기재 - 상품의 생산 국가명 또는 지역명은 약자의 형태로 기재할 수 없음
식품의 라벨링 표시사항	중량	- 측정 단위로 중량을 측정하는 상품은 베트남의 도량형법에 따라 그 중량을 표기하여야 하고, 수량으로 중량을 측정하는 상품은 그 수량을 자연수로 표기하여야 함 - 다수의 상품 단위가 함께 단일 포장된 상품의 경우 개별 상품 단위의 중량과 단일 포장된 상품의 총중량을 표기하여야 함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상품의 제조일자, 유통기한은 양력을 기준으로 하며 일, 월, 년의 순서로 기재 • 일, 월, 년을 표시하는 숫자는 두 자릿수로 표시하고 년을 표시하는 숫자는 네 자릿수로 표시할 수 있음. 일, 월, 년을 나타내는 숫자는 같은 줄에 표기하여야 함 • 제조일자를 제조월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 양력을 기준으로 월, 년의 순서로 기재 • 제조일자를 제조년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 양력을 기준으로 년을 나타내는 숫자 네자릿수를 표기하여야 함 • 라벨에 “제조일자”, “유통기한”으로 기재하거나 “NSX”, “HSD” 또는 “HD”의 약자 형태로 기재할 수 있음 -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상품의 경우, 유통기한은 제조일자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의 시점으로 기재해야 하며 제조일자는 유통기한보다 일정 기간 이전의 시점으로 기재해야 함 - 분배, 분할 포장, 혼입, 재포장하는 경우 그 분배, 분할 포장, 혼입, 재포장한 날을 표시하고 유통기한은 라벨에 원래 표시된 제조일자로부터 계산
	성분 또는 성분별 중량	- 식품의 경우 질량이 큰 성분부터 작은 성분의 순서로 기재 - 상품명과 함께 자연 원료 추출물, 물질명을 기재하는 경우 그 추출물, 물질의 성분별 중량을 기재하거나 해당 추출물, 물질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료의 질량을 기재하여야 함. 단, 색상, 향, 맛을 내기 위해 사용된 첨가물이 상품명에 포함되는 경우 그 첨가물의 중량은 표기하지 않아도 됨

	운송, 저장, 보관 시 건강, 재산, 환경 안전을 위해 필요한 주의사항	-
	사용 및 보관 안내	-

자료: Decree 43/2017/ND-CP, 베트남 관세청

□ 판매 중인 딸기 라벨링 예시

항목	설명	
제품 이미지	외관	라벨링
		
제품명	한국 딸기	
수출업자	이름	Chang Rak Farms
	주소	857, Changnyeong-eub, Changyeong- gun, Gyeongsangnam-Do, Korea
수입업자	이름	City TNHH Lotte Vina International
	주소	Tầng 3, Beautiful Saigon, Số 02 Nguyễn Khắc Viện, P.Tân Phú, Quận 7, Tp HCM
원산지	한국	
중량	330g	
포장일자	2018.12.12	
유통기한	포장일로부터 5일	
섭취방법	사용 전 깨끗이 세척하고 상했을 경우 섭취 불가	
보관조건	0~5°C에서 보관	

자료: 현지조사원(2018.12.17)

□ 상품의 라벨 기재 책임 및 주의사항

- 상품의 라벨 및 부가 라벨의 내용은 진실성, 명확성,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며 상품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함
 - 베트남에서 유통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상품의 경우 그 상품을 생산하는 개인, 단체가 해당 상품의 라벨 기재에 대한 책임을 짐. 상품의 라벨 기재에 책임이 있는 개인, 단체가 다른 개인, 단체에게 라벨 기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 요청을 한 개인, 단체에게 여전히 상품의 라벨 기재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수출품이 수출되지 않거나 수출 후 반품되어 베트남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 그 상품을 유통하는 개인, 단체에게 상품의 라벨 기재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수입품에 부착된 라벨이 '상품 라벨링에 관한 시행령'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제품을 수입하는 개인, 단체에게 상품의 라벨 기재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상품의 라벨은 주권 분쟁에 관련된 사진, 내용과 베트남 안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관계, 미풍양속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민감한 내용을 표현할 수 없음

4. 위생요건

□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규정 관련 국가표준

-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에서 실시하는 검역 및 제품 검사, 위생 검사를 거쳐야 하며, 식품첨가물 등의 제품 성분이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규정(05/2018-TT-BYT)에 부합해야 함
-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의 생화학적 오염 최대 기준치에 대한 규정(Part 8 of Decision 46/2007/QD-BYT), 미생물 오염에 대한 국가기술 기준(05/2012; QCVN 8-3:2011), 중금속 오염에 대한 국가기술 기준(02/2011; QCVN 8-2:2011), 곰팡이 독소 오염에 대한 국가기술 기준(02/2011; QCVN 8-1:2012/BYT), 식품 속 동물성의약품 최대사용제한 규정(2013-24/TT-BYT)을 명시하고 있음

표 3.10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관련 규정

구분	규정명
식품첨가물 허용기준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규정(05/2018-TT-BYT) : 아래 2015-08의 개정안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규정(08/2015-TT-BYT) : 첨가물 규정이며 2018년에 개정됨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식품의 생화학적 오염 최대 기준치에 대한 규정 (Part 8 of Decision 46/2007/QD-BYT) : 생화학오염의 최대치와 가공보조제의 기준 허용치 목록
	미생물 오염에 대한 국가기술 기준 (05/2012; QCVN 8-3:2012/BYT)
	중금속 오염에 대한 국가기술 기준 (02/2011; QCVN 8-2:2011)
	곰팡이 독소 오염에 대한 국가기술 기준 (02/2011; QCVN 8-1:2012/BYT)
	식품 속 동물성의약품 최대사용제한 규정 (2013-24/TT-BYT)

자료: 2017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8.03.

□ 딸기의 식품첨가물 허용기준

- 신선 딸기의 경우 식품첨가물 허용기준(05/2018-TT-BYT)에서 규제하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딸기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딸기의 잔류 농약 허용기준은 식품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No.46/2007/QĐ-BYT)을 따름

표 3.11 딸기 잔류농약 허용기준

(단위: mg/kg)

물질명	제한기준	물질명	제한기준
Azocyclotin	0.5	Iprodione	10
Bifenthrin	1	Lindane	3
Bromide ion	30	Malathion	1
Bromopropylate	2	Mevinphos	1
Captan	20	Penconazole	0.1
Carbaryl	7	Permethrin	1
Chinomethionat	0.2	Phosphamidon	0.2
Clofentezine	2	Pirimicarb	0.5
Cycloxydim	0.5	Pirimiphos - methyl	1
Cyhexatin	0.5	Procymidone	10
Deltamethrin	0.05	Propamocarb	0.1
Diazinon	0.1	Propargite	7
Dichlolanid	10	Propoxur	3
Dichloran	10	Pyrazophos	0.2
Dimethoate	1	Thiabendazole	3
Dodine	5	Thiophanate - methyl	5
Ethoprophos	0.02	Tolyfluanid	3
Fenarimol	1	Triadimefon	0.1
Fenbutatin oxide	10	Triadimenol	0.1
Fenitrothion	0.5	Triazophos	0.05
Folpet	20	Triforine	1
Hexythiazox	0.5	Vinclozolin	10
Imazalil	2		

자료: 베트남 식품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USDA, 2008

- 딸기의 미생물 오염 허용기준은 미생물 오염에 대한 국가기술 기준(05/2012; QCVN 8-3:2012/BYT)을 따름

표 3.12 딸기 미생물 오염 허용기준

구분	물질명	제한기준
즉시 섭취 가능한 과일	E.coli	1000CFU/g
	Salmonella	25g(ml)에서 미검출

자료: 베트남 식품의 미생물 규제, USDA, 2013.12.

- 딸기의 중금속 오염 허용기준은 중금속 오염에 대한 국가기술 기준(02/2011; QCVN 8-2:2011)을 따름

표 3.13 딸기 중금속 오염 허용기준

(단위: mg/kg)

구분	물질명	제한기준
채소 및 과일 (채소 및 과일 주스 제외)	Antimon(Sb)	1.0
	Arsen(As)	1.0
	Hg	0.05
	Copper(Cu)	30
	Zinc(Zn)	40
채소 및 과일 (잎이 많은 채소, 줄기 채소, 박하, 균계, 뿌리 채소 및 감자 제외)	Cadmium(Cd)	0.05
과일	Lead(Pb)	0.1
작은 과일, 즙이 많은 과일과 포도		0.2

자료: 베트남 식품의 곰팡이 독소 및 중금속 잔류허용기준, 미국 상부무, 2013.10.

- 딸기의 곰팡이 독소 오염 허용기준은 곰팡이 독소 오염에 대한 국가기술 기준(02/2011; QCVN 8-1:2012/BYT)을 따름

표 3.14 딸기 곰팡이 독소 오염 허용기준

(단위: µg/kg)

구분	물질명	제한기준
모든 식품	Aflatoxin B1	5
	Aflatoxin B1B2G1G2	15
과일 및 과일 주스	Patulin	50

자료: 베트남 식품의 곰팡이 독소 및 중금속 잔류허용기준, USDA, 2013.10.

[참고 문헌]

■ 참고 자료

1. 「신남방정책과 아시아 주요국 진출환경」,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8.7.
2. 「베트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8.2.
3. 「Country Insight Snapshot Vietnam October 2018」, Dun & Bradstreet, 2018.10.12.
4. 「Country Insight Report Vietnam October 2018」, Dun & Bradstreet, 2018.9.14.
5. 「2016 검역타결품목 조사 딸기 베트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7.02.
6. 「2015 베트남 신선딸기 시장 조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5.12.
7. 「2017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I」,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8.03.
8. 「Vietnam FAIRS Subject Report Vietnam Maximum Residue Levels in Food」,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2008.08.06.
9. 「Vietnam Technical Regulation on Microbiological MRLs in Food」,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2013.12.16.
10. 「Vietnam Technical Regulations on Mycotoxin and Heavy Metals MRLs in Foods」,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2013.12.10.

■ 참고 사이트

1. Internet World Stats(www.internetworldstats.com)
2. Euromonitor International(www.portal.euromonitor.com)
3. 관세법령정보포털 3.0(unipass.customs.go.kr)
4. 세계 HS 정보시스템(www.customs.go.kr)
5.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6. KATI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7. 베트남 관세청(www.customs.gov.vn)
8. vietnamnews.vn
9. english.vietnamnet.vn
10. bnews.vn
11. chlml.com.vn
12. weekMrade.co.kr
13. hcimi.com.vn
14. Vietnam Travel Guide
15. 관세법령정보포털 3.0(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16. 통합무역정보서비스(www.tradenavi.or.kr)
17. 대한민국 관세청(www.customs.go.kr)

2018 농식품 해외시장 맞춤조사

No. 1811-24

품 목 : 딸기(Strawberry)

국 가 : 베트남(Vietnam)

보고서 기획 및 작성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발 행 일 2019

발 행 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정보부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02-6300-1119 <http://www.kati.net>

자료문의 aT수출정보부

02-6300-1119

o 본 자료는 한국농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정보 사이트 www.kati.n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o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o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제,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